

200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안

심 사 보 고

2002. 10. 23.
기획행정위원회

1. 심사경과

가. 제출자 : 충청북도지사

나. 제출 및 회부일자

- 제출일자 : 2002년 10월 8일
- 회부일자 : 2002년 10월 9일

다. 상정일자 : 제205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

- 2002. 10. 18 : 제3차 기획행정위원회, 제안설명 및 검토보고, 심의의결

2. 제안설명 요지

(제안설명자 : 자치행정국장 주 준 길)

가. 제안이유

- 21세기 첨단분야 예비창업자 및 창업초기단계 중소기업에 대한 안정적이고 효과적인 기술지원과 체계적인 창업보육지원 체계 구축을 위한 충북과학대학 창업보육센터 건립사유가 발생하여

- 현재 옥천군으로부터 무상대부하여 사용하고 있는 부지와 옥천군소재 도유재산을 교환하여 충북과학대학 창업보육센터를 신축코자 지방재정법 제77조(공유재산관리계획) 및 충청북도 공유재산관리조례 제37조(공유재산관리계획)의 규정에 의하여 도의회 의결을 구하고자 함

나. 주요골자

□ 재산의 취득·처분

《 충북과학대학 창업보육센터 부지교환 》

○ 대상재산

- 도유재산 : 옥천읍 대천리 647-5외 30필지 11,345㎡정도
- 군유재산 : 옥천읍 금구리 85-20 학교용지 3,437㎡

○ 재산가액

- 도유재산 : 846백만원
- 군유재산 : 845백만원

※ 재산가액은 개별공시지가 가격이며 교환시 동가교환

□ 재산의 취득

《 충북과학대학 창업보육센터 건립 》

- 위 치 : 옥천군 옥천읍 금구리 85-20
- 규 모 : 부지 3,437㎡, 연건평 2,380㎡(720평 지상2층)

○ 사업기간 : 2002 ~ 2003. 12

○ 사업비 : 1,886백만원(교부세 800, 도비686, 국비400)

※ 사업비는 건축비만 계상 (부지는 옥천군소재 도유재산과 교환)

3. 검토보고 요지

(기획행정위원회 전문위원 한 상 혁)

○ 2002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을 검토한 바

이는 충북과학대학에서 예비창업자 및 창업 초기단계 중소기업에 대한 기술지원과 지원체계 구축을 위하여 창업보육센터를 건립하고자 옥천군소유의 건립예정부지를 옥천군 소재 도유재산과 교환하고,

부지 1,040평, 연건평 720평(지상2층) 규모의 창업보육센터를 건립하고자,

지방재정법 제77조 및 충청북도공유재산관리조례 제37조의 규정에 의거 의회의 의결을 구하려는 것으로,

장기적인 충북과학대학 및 창업보육센터의 발전을 위하여 필요성은 인정되나,

지방재정법 제77조 및 동법 시행령 제84조의 규정에 의거 자치단체의 장은 예산을 편성하기 전에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함에도 2002. 7월 제1회 추가경정예산에 계상한 사유와

충북과학대학 내 무상사용하고 있는 옥천군 소유 공유지의 조
치계획과 도유 잡종재산 대부분이 전·답·하천 등으로 주민에게
대부되어 있어 재산교환에 따른 대부계약 해지 등 문제점에 대
하여는 자세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사료됨.

4. 질의 및 답변요지 : “생략”

5. 토론요지 : “생략”

6. 심사결과 : 원안가결

7. 소수 의견요지 : “없음”

8. 기타 필요한 사항 : “없음”

9. 심사보고서 첨부서류

- 2002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안(의안번호 제26호)